

「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01월 13일, 장문혁의원 발의
-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7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73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
(2022년 1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장문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평창군 내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, 지원비율을 상향조정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에 있어 평창군 거주기간과 해당사업영위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(안 제8조제2항)
- 지원대상자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비율을 기존 최대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변경(안 제8조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남섭)

○ 본 조례안은

우리군 내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

사업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, 지원비율을 상향조정 지원함으로써
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.

○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

안 제8조제2항에서는

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에 있어 관내 거주기간과 해당 사업
영위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,

안 제8조제3항에서는

지원대상자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비율을

기존 최대 50에서 80퍼센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

○ 조례안은

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고,
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부서별 시설개선 추진사업에
일관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며
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3년 이상 주민등록”을 “2년 이상 주민등록”으로, “3년 이상 계속하여”를 “2년 이상 계속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최대 50퍼센트”을 “최대 80퍼센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시설개선 등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은 평창군에 최근 <u>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평창군에서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</u>으로 한다.</p> <p>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 사업비 1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<u>50퍼센트</u>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시설개선 등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2년 <u>이상 주민등록</u>----- ----- 2년 이상 계속 <u>하여</u>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u>80퍼센트</u>----- -----.</p>